

가축개량기술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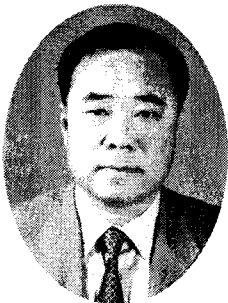
社団法人 韓國家畜人工授精師協會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64
(축산기술연구소 내)

발행인 : 김 의 성 전 화 : 031)295-9401
031)296-0637

편집인 : 차 영 호 FAX : 031)296-0637

인 사 말



회장 김 의 성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전국에 계시는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회원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된 것이 엇그제 같으나 어느덧 금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 지

셨으며, 여러분 가정이 평안 하셨는지요? 제가 회장에 취임한지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회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으며 더욱이 쇠고기 수입개방이 다가옴에 따라 사육두수가 감소 되었고 아울러 자가인공수정과 자연교미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협회 소식지인 “가축개량기술정보”가 1998년 12월1일에 마지막으로 발행된 이후 그동안 중단되어 회원님들이 협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셨을 줄 알고 있으나 그동안 협회의 사정상 중단되었던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협회의 소식지의 필요성을 재 인식하여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격려를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가 어려운 가운데 현재까지 지속할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회원님들의 꾸

준한 협조와 성원의 힘이 뒷받침된 결과 였다고 봅니다.

1999년까지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개량을 위하여 정부에서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주었으나 2000년에는 지원이 중단되어 수정란, 체세포이식, 특수가축 인공수정기술 교육 및 자연교미 방지홍보를 위한 2001년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고, 회비 납부 실적이 미진하여 협회의 존폐문제가 대두되어 이의 해결책으로 정액 S/T당 200원씩을 협회비로 2001년부터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확정되면 도지회에 지원금을 내려 보낼수 있고 정책사용 실적이 많은 회원님들께는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2001년에는 우리 협회가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협회가 보다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주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여러분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어 한국가축인공수정사 협회가 든든한 반석위에 설수 있게 도와 주셔야 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새천년도 보다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뒤늦게나마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회 장	성 진 희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73-2	043-260-0574	
부회장	안 장 호	경남 울산군 능소면 달천리 547	055-95-5276	
이 사	김 상 명	경기 남양주군 퇴계원면.리	031-64-9250	
"	권 혁 만	강원 춘천시 효자2동 312-2	033-52-1300	
"	황 종 기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199-11	042-932-0539	
"	지 용 주	충북 청주시 내덕동 300-2	043-256-8740	
"	허 명 석	경남 하동군.읍 신기리 104-54	055-84-3045	
"	장 정 열	경북 영주시 휴천2동 317-29	054-33-6500	
"	최 낙 진	전남 순천시 인제동 367-9	061-741-8044	
"	공 유 식	전북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337	063-861-3500	
감 사	김 의 성	전남 무안군.읍 성내리 144-1	061-52-6343	
"	권 연 중	강원 원주시 봉산2동 산48-2	033-43-0315	

2대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회 장	이 재 우	충북 청주시 외하동 382-8 4/4	043-211-1118	
부회장	안 장 호	경남 울산군 능소면 달천리 547	055-95-5276	
이 사	윤 화 용	경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300	031-958-3622	
"	권 순 철	경기 여주군.읍 청리 37-2	031-85-4006	
"	손 승 화	강원 횡성군.읍 읍하1리 112	033-43-2834	
"	우 충 석	충남 천안시 성환읍.리 449-29	041-581-2843	
"	박 금 연	충북 청주시 강내면 탑엽 274-2	043-231-9993	
"	최 규 수	경남 고성군.읍 송학리 (우성사료내 고성)	055-73-4612	
"	정 용 기	경북 점촌리 흥덕동 802-15	054-52-2886	
"	정 길 용	전남 광양군.읍 읍내리 133-2	061-763-2188	
"	임 승 식	전북 정주시 수성동 524-12	063-33-7474	
감 사	김 의 성	전남 무안군.읍 성내리 144-1	061-52-6343	
"	권 연 중	강원 원주시 봉산2동 산48-2	033-43-0315	

3대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회 장	이 재 우	충북 청주시 외하동 382-2 4/4	043-211-1118	011-481-1118
부회장	안 장 호	경남 울산군 능소면 달천리 547	055-95-6507	
이 사	홍 규 태	경기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803	031-32-9267	
"	방 만 호	경기 양평군.읍 양근리 444-9	031-72-7107	
"	권 연 중	강원 원주시 봉산2동 산 48-2	033-43-0315	011-368-3000
"	김 본 중	충남 홍성군.읍 오관리 457-7	041-32-3626	011-264-4724
"	박 금 연	충북 청주시 강내면 탑연 247-2	043-231-9993	
"	이 시 화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055-72-3939	
"	이 재 복	경북 안동시 상아동 302-5	054-858-1067	011-538-1067
"	김 의 성	전남 무안군.읍 성동리 843-7	061-453-7700	011-609-2616
"	권 혁 윤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구리 358-27	054-546-5863	011-659-3863
감 사	장 길 용	전남 광양군.읍 읍내리 133-2	061-763-2188	011-640-2188
"	서 양 환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6-24	054-42-5354	011-812-1774

4대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회 장	안 장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547	052-295-5276	017-584-5276
부 회 장	지 용 주	충북 청주시 내덕1동 300-4	043-256-8740	011-461-1785
남부이사	진 용 선	경기도 용인시 외사면 백암리	031-332-4687	019-358-4687
북부이사	이 상 익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608-7	031-846-2562	
이 사	김 진 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2리 720-4	033-72-3455	011-376-0088
이 사	이 길 수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438-4	043-42-7989	011-461-7988
이 사	원 내 희	충남 논산시 채운면 우기리 156	041-741-4065	016-406-4065
이 사	김 의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65-13	062-944-2616	011-609-2616
이 사	권 혁 윤	전북 김제시 금구면.리 358-27	063-546-5863	011-659-3863
이 사	하 현 철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242-7	055-72-9000	019-551-3690
이 사	이 재 복	경북 안동시 상아동 302-5	054-858-1067	011-538-1067
감 사	서 양 환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6-24	054-42-5354	011-812-1774
감 사	공 성 수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 60-1	063-52-3574	011-609-3895

5대 임원진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회 장	김 의 성	광주 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5-79	062-944-2616	011-609-2616
부 회 장	지 용 주	충북 청주시 내덕1동 293-12	043-256-8740	011-461-1785
남부이사	진 용 선	경기도 용인시 외사면 백암리	031-332-4687	019-358-4687
북부이사	한 규 영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1리 409-1	031-952-3570	011-238-1865
이 사	임 흥 원	강원도 홍천군.읍 연봉3리 183-3	033-433-1649	011-371-1649
이 사	지 재 학	충북 진천군.읍 교성리 368-10	043-533-2221	011-462-0070
이 사	원 내 희	충남 논산시 채운면 우기리 156	041-741-4065	016-406-4065
이 사	오 종 록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062-452-5524	011-632-2200
이 사	한 대 승	전북 김제시 옥산동 54번 나동303호	063-547-2617	011-659-3767
이 사	추 만 수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북면 지산250-17	055-271-3035	011-883-1161
이 사	이 도 희	경북 상주시 낙동면 비룡리 177	054-536-5119	017-534-5119
이 사	소 동 진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1189-4	064-722-1217	011-698-3919
감 사	김 주 현	경북 상주시 함창읍 중촌리 246	254-541-7959	017-805-7959
감 사	차 상 준	충남 예산군.읍.주교1리 241-8	041-32-5424	017-424-5424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①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가축 인공수정사협회라 칭한다.
- ② 외국어 표기는 Korea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Association(K.A.I.T.A)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함으로써 협동조직

을 강화하여 회원의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물론 가축개량 증식사업을 통하여 축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이의 중부권에 두고 각 지역별로 지회와 지부를 둘 수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가축개량증식을 위한 기술도입 및 교육사업
- 2. 정액유통 및 기자재개발 보급 알선사업
- 3. 가축인공수정사업의 조사연구사업
- 4. 회원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 5. 정부 또는 타기관과의 협조 및 위촉사업
- 6. 간행물 발간 사업
- 7. 외국축산단체와의 국제협력 및 유대강화와 기술교류사업
-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치참여금지)

본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절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법률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로 한다.

제7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회원의 자격유무에 관한 심사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8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의무
 - 2. 회비 및 제경비의 부담의무

제10조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하고자 할 때
 - 2. 제 6조에 규정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 3. 사망한 때
 - 4. 파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5. 제명 되었을 때

-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명)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1.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12조 (납입금)

- ① 가입비 및 회비는 정액제로 하며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②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회비 및 납입금 일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의

제13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와 임시총회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도 말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 (3)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결의로서 이를 대행하고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개최일 7일전에 그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목적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결)

- 다음 사안은 총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 3.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과 변경

-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5. 회비의 장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6. 지회 및 지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7. 회원의 제명
- 8. 해산, 분할, 합병 및 이에 따른 재산 처분
-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회칙에 준하여 진행한다.
- ② 총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서 의결되다가 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해산 결의 및 정관변경은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 ④ 총회의 의사록 의사결정에 관한 경우와 의결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정한 회원 2인이상의 서명날인한다.

제17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목적사항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결)

다음 사항은 이사회결을 얻어야 한다.

-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
- 2. 본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결정
- 3.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처리
- 4. 회원의 가입 자격 심의
- 5.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 6. 차입금의 최고한도
- 7. 고문 및 전문위원추대
-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의사)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으로 성원된다.
- ②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 감사 및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20조 (의결권의 위임)

회의에 출석치 못하는 대의원, 회원 및 이사는 의결권을 서면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일 경우에는 대의원, 회원 및 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마시킬 경우에는 회의개최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회 및 지부)

- ① 지회는 각도별로 각1개의 지회를 둔다.
단, 경기도는 2개의 지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는 특별시 시.군별로 둘 수 있다.
- ③ 지회에 지부장, 지부에 지부장을 두며 지회장 및 지부장은 지역별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지역별 회원총회는 해당지역실정에 맞도록 실시한다.
- ⑥ 지회 및 지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 (대의원)

-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각지역별 지부장 및 지회중앙회 임원 및 사무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단, 회원 20명이 넘는 지부는 20명당 1명씩 추가한다.
-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23조 (임원)

본회에 다음으 13명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인
- 부회장 : 1인
- 이 사 : 9인 (각도별)
- 감 사 : 2인

제24조 (임원의 선임)

-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비밀 투표로 하며, 선출은 다득표자로 정한다.
- ③ 임원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총회에서 정한다.

- ④ 정·부회장은 지회장을 지회장은 지부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25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 (정,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 또는 승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은 임기전일지라도 총회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② 해임이 요구된 임원은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임무)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 사 : 본회의 운영과 업무를 처리한다.
- 감 사 :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한다.

제28조 (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의 회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29조 (임원의 성실의무)

본회의 임원은 민법 또는 기타 법규로 규정한 제반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수당과 여비)

본회의 임원에게는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국과 직원)

- ①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국장 및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퇴직금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3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 회 비
- 사업수입금
- 찬조금 및 기부금
- 보조금 및 출순금
- 기타 수입금

제33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예산 및 결산)

- ① 본회의 예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하고 집행한다.
- ② 예산 및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35조 (해 산)

본회의 해산 및 해산에 따른 재산처분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청 산)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 7 장 부 직

제37조 (창립일 및 임기기산일)

창립일 또는 임원 및 지회장, 지부장 그리고 대의원등의 임기 기산일은 주무부 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일로부터 한다. 단, 총회 개최일이 임기 기산일 이후일 경우 전임자의 임기를 신임회장 선출시까지로 한다.

제38조 (시행일 및 등기)

본회의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여 등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한다.



2월28일 : 서울대학교 황우석교수 방문

3월

3월11일 : 박충생교수 방문

3월12일 : 신원집교수 방문(전북대)

3월13일 : 황우석교수, 농림부 방문
정영채고문 방문

4월

4월 6일 : 농림부 방문

4월11일 : 축협중앙회 개량본부(서산)2회

4월17일 : 축협 유우개량부(원당)

4월21일 : 중앙대학교(안성) 정영채고문

5월

5월 8일 : 축산신문 취재(조용환이사 인공
수정사 교육확대 필요성)

5월 9일 : 축산기술연구소(성환)

5월13일 : 전북대 신원집교수

5월17일 : 선진국형 친환경 축산업발전 심포지움

5월22일 : 황우석교수 방문

5월25일 : 축협중앙회 한우개량부 방문

5월26일 : 수정란이식 학회 춘계 세미나(성환)

6월

6월 1일 : 축산기술연구소(수원)

6월 2일 : 종축개량부(성환)

6월12일 : 농림부 축산정책과

6월13일 : 종축개량부(성환)

6월19일 : 긴급이사회(신임국장채용, 협회기금의 건)
체세포복제 실무협의회(수원축산기술연
구소)

6월20일 : 축산종합 전시회(축산신문주최)

6월23일 : 서울대(황우석교수 방문)

6월26일 : 한우개량부(서산), 강원도지회방문(부회장)

6월27일 : 농림부 축산정책과

7월

7월 6일 : 협.개.연 간담회

중앙대학교 정영채 교수방문(보수교육
예산안)

7월20일 : 축산기술연구소(육종번식과)협회발전 방
안모색

7월25일 : 2000년 축산시험 연구사업 평가회(가축
번식생명공학)

종축개량부(성환)

7월26일 : 회장단 회의(전주)

7월28일 : 젓소 개량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성환
축산기술연구소)

8월

8월 1일 : 이사회, 축.기.연(성환)협회운영비에 관한
협의

8월10일 : 축산기술연구소(수원)

8월22일 : 체세포 복제 이식연구회 모임(이천)서명
독려

9월

9월 4일 : 한우 개량부(서산)

9월19일 : 축산기술연구소(수원)

9월28일 : 수정란 이식학회 모임

10월

10월19일 : 이천-양평군지부 방문(서명건)-국장

10월27일 : 강원도지회(홍천방문)-국장

10월30일 : 농림부방문(체세포복제 논란 국정감사건)

11월

11월 3일 : 한국수정란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한경
대학)

원당 젓소개량부(광고료협의)-국장

11월11일 : 광주(협회장 장녀결혼식 참석)-국장

11월17일 : 경기북부 회의참석-회장.국장

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개최(축산회관)

종축개량협회(협회발전방향 협의)

11월18일 : 축산기술연구소(음식물 사료화 심포지움)

11월23일 : 제주도지회 창립 참석

12월

12월 8일 : 축산기술연구소장 면담

12월 9일 : 종축개량부 개량기획과장 면담

12월14일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장 면담

체세포 복제 수정란 보급 보완추진

우리 축산업을 개방화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체세포 복제 기술을 활용한 우량소 보급사업은 현장적용기술개발과 함께 희망농가에 한하여 복제 수정란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체세포 복제 수정란이식 소의 임신율이 낮고, 복제소 생산물인 우유 및 고기 등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초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올해 체세포 복제 수정란 공급계획량(2,500개)에 대하여는 11월8일 현재 이식시술을 준비하여 발정호르몬 주사 등이 처리된 암소를 제외하고는 공급을 중단하되 축산기술연구소의 경우는 금년도 생산계획량(500개) 범위 내에서 축기연 또는 개량기관의 연구용으로 공급
- 축산기술연구소는 그 동안 체세포 복제 수정란을 이식한 농가를 대상으로 각도 축산기술연구소(중축장)의 협조를 얻어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농가별 복제수정란 이식암소 사육 현황을 조사하고 대학등 민간연구기관 등의 복제소 생산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축산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 축산기술연구소는 복제 수정란 이식 암소와 복제소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2001년도에는 축산기술연구소와 대학, 도축산기술연구소, 농가와 연계된 현장 실증시험에 한하여 체세포 복제 수정란을 공급할 계획임.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기술연구소, 대학 등과 협의하여 복제소 생산물의 식품안전성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 등의 복제 소에 대한 식품안전성 우려와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복제소 생산물(고기, 우유)의 식품 안전성 검사동향과 관련정보를 수집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소비자 단체 등에 교육·홍보 병행추진

- 김주현감사 석사학위 논문 요약 -

제목 : 韓牛 體外受精卵 移植 後 産子生産에 關한 研究

본 연구는 신선란과 동결란을 이식하여 수정란 이식 효율을 개선하고 쌍자를 생산함으로써 양축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가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도축장에서 채취한 난소에서 미성숙 난자를 채란하여 10% FBS가 첨가된 TCM-199에 LH(10 $\mu\text{g}/\text{ml}$), FSH(10 $\mu\text{g}/\text{ml}$), estradiol-17 β (1 $\mu\text{g}/\text{ml}$)가 첨가된 체외성숙 배양액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후, 체외수정을 유도하였다. 수정이 확인된 수정란은 50 μl 배양액에 25~30개의 수정란을 난관상피 세포와 공배양을 하여 9일 동안 배양·동결하였다. 동결 용해한 수정란 또는 신선란을 한우, Holstein에 수정란을 황체가 존재하는 자궁각이나 반대측 자궁각에 이식하거나, 인공수정 후 수정란을 각각 이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선란 또는 동결란을 1, 2개를 수란우에 이식한 결과, 각각 수태율이 78%(7/9)와 74%(31/42)였다.
2. A, B, C의 황체 등급에 따라 수정란을 이식하여 A와 B의 황체를 가진 수란우에서 수태율이 각각 75.0%(20/27)와 82.0%(18/22)의 수태율을 나타내었다.
3. Holstein에 신선란과 동결란을 이식했을때, 각각 수태율이 67% (10/15)와 42.0%(5/12)로 신선란에서 수태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P < 0.05$)차이는 없었다.
4. 한우에 인공수정 후 신선란을 이식했을 때 단태율과 쌍태율이 각각 77.0%(10/13)와 23.0%(3/13)였으며, 동결란이식의 경우는 64.0%(7/10)와 27.2% (3/10)였다.
5. 신선란 이식시 분만율과 유산율은 각각 88.0% (21/24), 8.3%(2/24)이며 동결란을 이식 할 경우에는 88.0%(14/16), 13.0%(2/16)로서 동결란에서 다소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회 · 원 · 소 · 식

· 김주현 감사 농학 석사학위 취득

- 취득일 : 2000년 8월

- 학 교 : 상주대학교 축산대학원

- 제 목 :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후 산자생산에 관한연구

요약하면, 황체의 등급이 A, B인 수란우에 1 또는 2개의 신선란을 이식하는 것이 높은 경향의 수태율을 나타내었으나, 쌍태를 유기하기 위해서는 신선란 뿐만 아니라 동결란을 이식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우관련 정책

◆ 송아지 생산 안정제

2001년부터 생우와 쇠고기수입 자유화의 영향으로 송아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영세한 27만 호의 번식농가를 중심으로 번식용 암소 사육의 포기 that 이루어질 것이고 번식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32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2000년부터 전면적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번식농가의 안정판 역할을하고 소 가격 하락의 충격에서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송아지를 생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번식농가에서는 가능한 모두 이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2001년부터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사업시행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 종전의 안정 기준가격은 90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송아지 가격하락시 1두당 지원 한도액도 200천원에서 250천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니 송아지 가격이 130~140만원정도 되는 요즘에는 관계없지만 송아지 가격이 75만원까지 하락한다 하여도 100만원 까지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표 1]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 변경안 요약

구 분	현행(2000)	변경(2001)	변경사유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두당900천원	두당1000천원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시책강화
지급한도금액	두당200천원	두당 250천원	

◆ 한우 다산 장려금

최근 암소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도 번식가능한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감

소할 뿐 아니라 가임암소중에서도 1~2산후 비육 출하 하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두수가 계속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한우 번식 기반의 붕괴우려가 있어 번식가능한 암소가 송아지를 보다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1~2산을 하는 암소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3산 이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00년 11월 1일 이후에는 3~4산우에 200천원, 5산이상은 300천원씩 지급하되 5산 이상부터는 한우 개량농가 육성사업에 가입하고 정확한 산차 기록이 있는 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우 이외에는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표 2] 연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년 도 별	97.12	98.12	99.12	2000.6
사육두수	1219	1061	854	738
비 율	100	87.0	70.0	60.5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식가능한 암소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도록 정부시책을 강화하고 생산자는 좋은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인공수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한우 다산 장려금 제도로 장려금 지급규모가 더늘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송아지 가격도 어느정도 회복(130~140만원 선)하였으니 송아지생산기반을 유지시킬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3] 한우 다산 장려금 변경안 요약

구 분	현행(2000)	변경(2000.11.1이후)	변경사유
한우다산 장려금 지급액	• 두당3~4산200천 • 5산이상 200천원	• 두당3~4산200천원 • 5산 이상 300천원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시책강화
농가 홍보		농가가 인공수정 증명서를 보관도록 적극홍보 (자연수정제외)	

※ 자료 : 농림부

일본에서는 암소 1두당 송아지를 7두이상 생산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우리도 젊은 암소를 비육

시켜 출하하는 것보다는 수송아지를 전두수 거세하여 고급육생산을 유도하고 암소는 전두수 송아지 생산에 활용해야한다. 물론 소를 사육하다보면 송아지 생산을 할 수 없게되는 암소도 있을수 있다. 이런 소는 할수 없이 비육을 하여야 하겠지만 번식가능한 암소는 적극적으로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어야 한다.

◆ 한우 거세 장려금

전편에서 언급 했지만 한우 거세우 출하두수는 년간 4만두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01년 목표중 1등급 출현비율 40%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암소 비육만 실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 도축두수 중에 거세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상태에서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면 고급육도 생산하고 번식용 암소를 비육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종모우나 후보 종모우등 특별한 용도이외는 모든 수송아지를 거세하고 있다. (95%이상)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의식은 거세하면 증체율이 낮다는 (8~12%) 의식과 사육기간이 연장된다는(3~4개월) 부담감, 거세우를 사육할 자신감이 없는 등에 의해서 거세를 기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군한우(대표 김용봉)에서는 거세우가 결코 비거세우보다 성장이 늦지 않는다는 것을 시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중축개량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능력평가(1~4회)에서 소득을 살펴보면 거세하여 비육한 결과 비 거세우에 비해서 수익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거세우를 사육하는 양축농가들은 거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세를 실시한다. 이또한 보다 거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표 4] 거세 장려금 시행지침 변경안

구 분	현행(2000)	변경(2000.11.1이후)	변경사유
• 한우거세 장려금 지급액	• 두당 100천원 -축발기금100%	• 두당 200천원 -축발기금 70% -지방비 30%	• 한우고기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 시책강화
• 지역별 한우 사업 추진 협의회 명칭	사업추진 협의회	•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	• 협의회와의 협의 내용법의 확대 -지역 한우 산업 전반에 걸친 협의

- 우수축 출하포상금을 2001년에는 생산 포상금으로 변경하고 2002년부터는 거세 장려금으로 통합
- 우수축 출하포상금은 거세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가 출하되는 2001년 말까지 지급하고 2002년 부터는 거세 장려금으로 단일화할 계획임.

[표 5] 우수축 생산 포상금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사업명 지급대상자	우수축 출하 포상금 우수축 출하자	우수축 생산 포상금 우수축 계통 출하하는 농가	포상금 지급액 • A1+, A1:150천원 • B1+, B1:100천원

경기도 2000년 한우사업 시행지침

◆ 사업목적

- 한우고급육 수요증가와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한우개량에의한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향상 및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마련

◆ 주요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등록에 의한 개량 및 송아지생산기반 마련
- 인공수정 사업지원으로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개량의 지속성 유지
- 수정란 이식의 실용화로 개량기간 단축

◆ 사업지원계획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29,350두	405,000	202,500	202,500	
한우혈통등록비	20,000두	100,000	50,000	50,000	
인공수정비	9,000두	270,000	135,000	135,000	
수정란이식시술비	350두	35,000	17,500	17,500	

//

◆ 추진요령

가.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협조단체 :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경기지역본부, 지역축협, 한우협회경기도지회 및 시군지부, 고급육생산자단체 등

나. 지원대상

- 한우개량에 의욕이 있는 한우사육농가(자연종부실시농가 제외)

다. 사업기간 : 2000. 9. 1 ~ 12. 31

라. 사업추진절차

- 한우등록사업
 - 시·군, 축협, 한우협회 시군지부가 등록대상농가 및 등록우 선발
 - 등록범위 :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 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등록대상을 일괄집계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종축개량협회에 일괄등록신청
 - 종축개량협회는 시·군 및 축협, 한우협회와 협조하여 등록처리
 - 등록비는 시·군에서 등록증 및 이표장착 확인후 종축개량협회와 협의 일괄정산방안 강구
 - 기초등록 : 3,000원 (우)
 - 혈통등록 : 5,000원 (우, ♂)
 - 고등등록 : 7,000원 (우)
- 인공수정 지원사업
 - 대상 : 한우사육농가로서 인공수정 실시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 (개업수정사 위탁수정, 농가자가 인공수정)

<개업수정사 또는 축협소속수정사 위탁수정>

- 지급액 : 수정료전액 (정액대+기술료)
- * 1두당 3만원 한도지원 (초발, 재발 포함)
- * 수정료는 지역에서 실제거래되고 있는 수정료를 기준으로 지급

* 축협지원농가 및 개량단지 인공수정료는 실제 농가부담금만 지급

- 지급방법 : 인공수정사가 발행한 인공수정증명서(축산법 시행규칙 20조)을 확인하고 농가에 지급

※ 시군에서는 인공수정사업 일괄지원 방안 강구

<농가자가 인공수정>

- 지급액 : 정액대금만 지원
- * 수정회수(초발, 재발등)에 관계없이 실제사용한 정액 대금지원
- 지원방법
 - * 정액구입영수증 확인후 지급
 - * 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인공수정이 가능한 농가인지와 자가인공수정 실시여부 확인 (확인사항 첨부)

※ 한우협회가 없는 곳은 축협에서 실시

- 사용정액 : 가급적 최고품질의 정액사용

• 수정란 이식지원사업

- 대상 : 연구기관, 대학, 도 종축장 등에서 생산한 한우수정란 이식농가
- 지급액 : 1두당 100,000원 한도지원
- 지급방법 : 인공수정사가 발행한 수정란이식증명서를 확인하고 농가에 지급
- ※ 시군에서는 인공수정사에 일괄 지급방안 강구

- 기술자 : 수정란이식 교육을 받은 개업수의사, 수정사 (공무원, 축협직원 제외)

- 시군에서는 수정란, 공급기관의 공급내역 및 기술실적 확인

- 수정란 이식증명서, 영수증 정구

◆ 공지사향

회원님들의 현장경험담 및 최신정보에 대한 많은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고 젖소 종모우 5두 도입



켈리 208HO00281

미국 전체종모우중 65등('00.11월)

종합지수(TPI) +1,459

유량(PTAM) +1,823 lb 유지량(PTAF) +55 lb
 유단백량(PTAP) +49 lb
 체형(PTAT) + 1.59 유용능력(DC) + 1.99
 신체형태 (BC) + 1.05 유방지수(UDC) + 0.99

아버혈통 : 벨우드(Bell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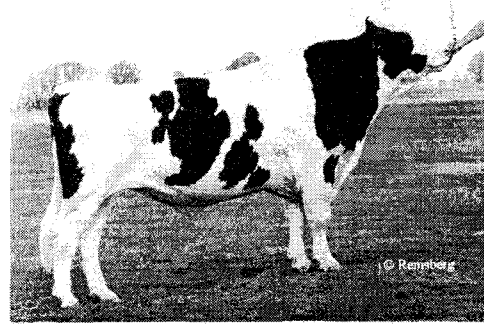
● 미국산



데이브 208HO00280

종합지수(TPI) +1,411

아버혈통 : 쉐시어스(Celsi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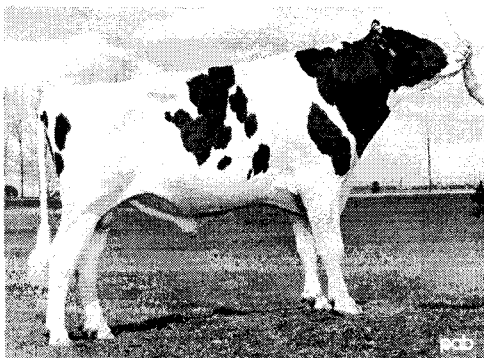


디사이퍼 208HO00277

종합지수(TPI) +1,358

아버혈통 : 린디(Lin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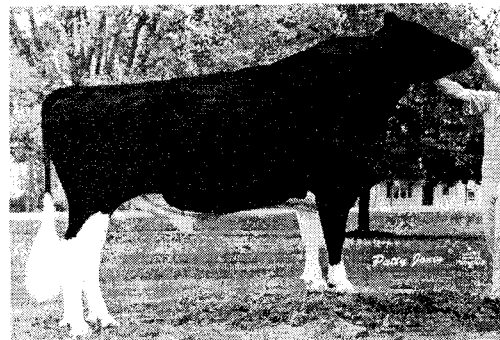
● 캐나다산 도입우



마캠 208HO00278

종합지수(LPI) +1,625

아버혈통 : 아스트레(Astre)



네서시티 208HO00279

종합지수(LPI) +1,497

아버혈통 : 로이트넌트(Leutenant)



디지털 낙농의 선두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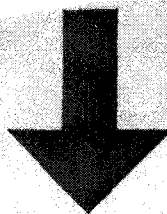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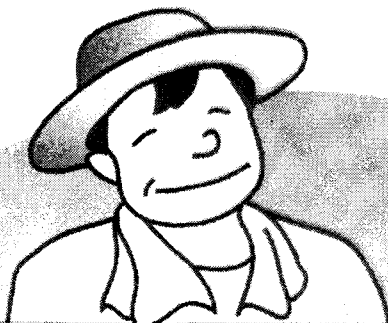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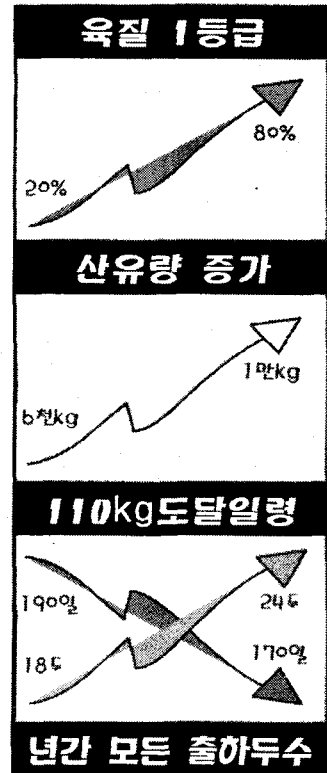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젖소개량부

전화 031) 965-9588, 전송 031) 963-4559, 인터넷 www.dcic.co.kr

중축개량은 미래를 준비하는 양축농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입니다.



- ▶ 계획교배 지침
- ▶ 육중가 분석
- ▶ 개량도 분석



양축농가 여러분의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중축개량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전화: 02-588-9301, 팩스: 02-582-3475 홈페이지: www.aiak.or.kr